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

박갑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명예교수

1. 서언

세계의 언어정책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고대에는 대체로 규제 아닌 방임정책(放任政策)을 폈다. 지배 영역 안의 다양한 언어 문자의 사용은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하나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였다. 기원전 5세기의 페르시아가 그 한 예이다. 왕명은 번역관에 의해 페르시아어에서 각 지역어로 번역 전달되었고, 상주(上奏)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근대의 언어정책은 이와는 달리 폐쇄정책(閉鎖政策)으로 바뀌었다. 근대 국가들은 국민용어의 일치에 주안점을 두어 언어와 문자의 통일 정책을 편 것이다(鹽田紀和, 1977). 제정 러시아의 피터 대제의 경우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근대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언어 문자를 우선 정하려 한다. 통일 국가는 하나의 표준어에 의한 국민의 결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여의치 못할 때는 복수표준어제를 택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근대 이전에는 이렇다할 언어정책을 펴지 않았다. 그것은 더구나 우리나라가 단일민족 국가였기 때문이다. 본격적으로 언어 정책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은 근대에 접어들어서라고 할 수 있

다. 더구나 표준어 정책은 개화기 이후 비로소 펴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러한 우리의 표준어 정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보기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어 정책을 반성하고, 그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로 한다.

2. 표준어 정책의 회고

2.1. 개화기 이전의 표준어 정책

우리는 언필칭 우리나라를 단일민족 국가라 한다. 따라서 다민족 국가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언어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개화기 이전에는 이렇다 할 인위적인 정책을 볼 수 없다. 정책이 있었다면 Stewart가 이르는 비격식 표준화(informal standardization)라고나 할 정책이 수행되었을 뿐이다. 의도적 표준화인 격식 표준화(formal standardization)가 아닌,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사회적 우위를 지향해 나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표준어 문제 이전의, 비격식 표준화로서의 표준어 정책을 살펴보게 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반도의 북쪽에는 부여족이, 남쪽에는 한족이 나뉘어 살았다. 이들은 크게 보아 같은 종족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했을 것으로 추단된다. 신라, 백제, 고구려의 경우도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양서(梁書) 제이전(諸夷傳)의 “百濟... 今言語服裝略如高麗同”은 백제의 지배종과 고구려의 언어가 대략 같았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액면 그대로 백제의 언어와 고구려의 언어가 대략 같았다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는 삼국사기의 지명 연구가 확인해 준다. 주서(周書) 이역전(異域傳) 백제조에 보이는 “王姓夫餘氏 號於羅瑕 民號靺吉支 夏言竝王也 妻號於陸 夏言妃也”는 지정학적 이유로 이들 언어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박갑수, 2000).

이들 언어는 신라의 통일, 고려, 조선조를 거쳐 중앙집권제도가 강화되면서 점점 공통어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공통어의 형성은 고구려의 태학

(太學) 및 경당(局堂), 신라의 국학(國學), 고려의 국자감 및 학당(學堂), 향교와 같은 교육제도의 확립과, 신라의 독서출신과(讀書出身科) 및 고려의 과거 실시 등으로 말미암은 중앙 관리의 파견 등에 의해 촉진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조의 양반계층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된 공통어를 갖추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대부분의 조선조의 한글 문헌이 중부 방언으로 쓰였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그러나 서민 계층은 물론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이덕무(李德懋)의 한훤당섭필(寒暄堂涉筆 新羅方言條)이 단적으로 증언해 준다(小倉進平, 1940). 그것은 지방 관장이 이예(吏隸)와 말이 통하지 않아 일에 착오가 많이 생겼으며, 이는 이예가 신라 방언을 쓰기 때문이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국 통일이나, 특히 경주 중심의 신라에서 개성 중심의 고려로 정치적 통일을 하면서도 언어에 대한 폐쇄정책의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일본의 경우와 대조되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16세기 도쿠가와 막부(德川幕府) 때 중앙집권 국가를 모색하며, 폐번치현(廢藩置縣)하고 번(藩) 안에서만 폐쇄된 생활을 하던 영민(領民)을 해방시켰다. 그리하여 번(藩)마다 다른 말을 쓰던 그들에게 언어의 통일, 표준어를 추구하게 하였다(眞田信治, 1988).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는 물론 한자에 대치할 국자를 제정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한자, 한문을 아는 기득권층이 아닌, 일반 서민을 위한 한자 대용의 문자 제정이었다. “어린 백성(愚民)”, 곧 민중을 위한 문자를 제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독자적 표기 수단의 개발이란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다. 공통어 확립에의 기여도 의미한다. 한글은 불경 및 사서삼경, 두시(杜詩) 등의 언해서와 삼강행실도 등 계몽서에 사용되었고, 고소설(古小說)을 이 땅에 탄생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일반 서민들은 공통어를 형성하게 되었고, 국가적으로는 표준어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다. 한글 제정은 이렇게 문자사상의 의미만이 아니라, 공통어의 형성이란 커다란 의미도 지닌다.

국어의 통일과는 달리 변이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그것은 한문의 수용이 빚은 결과이다. 앞에서 언급한 교육제도의 확립과 관리 등용제도는 이를

촉진하였다. 이들 학교에서는 사서삼경과 같은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시험 과목도 이러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 한문의 어휘는 자연스럽게 국어에 유입되었고, 구문(構文)은 우리말을 간섭(干涉)하였다. 신라 경덕왕 때의 한자어에 의한 지명 개정(757), 제도 관직의 개편도 고유어의 한자어화를 촉진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지명 개정은 일본에서도 강대한 중앙집권제가 형성된 713년 실시되었다(鹽田紀和, 1977). 이런 일련의 변화는 새로운 문화에의 지향을 의미한다.

국어에 대한 자각은 조선조에 와서 피해지게 되었다. 그것은 “나랏말싸미 뚝덕에 달아(國之語音 異乎中國)” 정음(正音)을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이며, 훈민정음의 합자해(合字解)에 “、一起 1聲 於國語無用”의 “國語”라는 말이 쓰인 것이 그것이다. “國語”라는 말은 동국정운에도 보인다. 이 말이 15세기에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때는 우리말이 중국어와 다르다는 자각을 하고 국자를 만든 시기인 것이다. “국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은 한문에 대한 자국어의 자각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뒤 개화기까지 “국어”에 대한 관심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한자의 운서(韻書)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는 당시의 관심이 우리말보다 한자, 한문에 기울어져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2.2. 개화기 이후의 표준어 정책

2.2.1. 표준어 정책의 개황

중국은 음성언어 아닌 문자언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도 이의 영향을 받아 동국정운의 제정이래 운서의 연구에 주로 집착했다. 우리 “국어”에 대한 본격적 관심이나, 연구는 개화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

표준어 문제는 공용문으로 한문을 사용하던 만큼 일찍이 제기되지 않았다. 한글이 창제된 뒤에도 문자생활은 한문이 주류를 이루었고, 서거정의

“동문선”에 보이듯 한문은 송원(宋元)이나 한당(漢唐)의 글이 아니고, “우리 나라의 글(乃我國之文也)”이라 생각했다. 그러니 국문의 표준어가 문제될 체계가 아니었다. 물론 표준어는 문어(文語) 아닌 구어(口語)의 문제로서도 마땅히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음성언어로서의 국어는 안중에도 없었다.

개화기에 접어들어 한글은 “國文”이란 이름을 얻게 되고, 고종 31년(1894)의 칙령 제1호로 공문은 한문 아닌 국문이 기본이 되고, 한문 번역을 붙이거나 국한문을 혼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공문식제(公文式制)는 문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문, 또는 한문의 번역이나 국한혼용은 표현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공통어의 문제를 제기하게 하였을 것이다.

개화기 이후 국한혼용문이 세력을 얻게 되고, 1895년 신교육제도가 실시되며 국어교육이 정식으로 꺾이면서 표준어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12년 조선총독부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처음으로 표준어를 규정하게 되었다.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 한 것이 그것이다. 그 뒤 제2, 제3의 “언문철자법”의 규정에 이어 1933년에는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새로 표준어가 규정되었다. “표준말은 대체로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에 앞서 조선총독부에서 1920년 간행한 “朝鮮語辭典”은 또한 당시 표준어의 한 기준이 되었다. 1936년에는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발간되었고, 1947- 1957년에 걸쳐 “큰사전”이 간행됨으로 표준어는 어느 정도 정비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1988년 “표준어 규정”이 제정되기까지 이들 규범에 따라 교육이 꺾이지고, 언어생활이 수행되며 차츰 표준어가 국민들 사이에 정착되게 되었다. 해방 전후해서는 이렇게 조선어학회(한글학회)가 표준어 정책을 주도하였다. 그 뒤 1988년 제정 공포된 “표준어 규정”이 학회 아닌, 정부 차원에서 심의 제정되면서 비로소 명실상부한 국가적 표준어 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는 개국 이래 최초의 표준어 규범으로, “표준 발음법”까지 아우른 것이다. 다음에 이들 표준어 규정을 중심으로 표준어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2.2.2. 총독부의 표준어 정책

조선총독부에서는 교육의 필요상 철자법을 정비했다. 이것이 소위 제1회, 2회, 3회의 “언문철자법”이다. 여기에 표준어를 규정하고 있다. 1912년에 공포된 제1회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의 “緒言”에서는 “京城語를 標準으로 함”이라 규정하였다. 이는 명문화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어 기준이다. 1921년의 제2회의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에서는 “용어는 현대의 경성어를 표준으로 함”이라 하여 제1회의 지역적 기준 외에 시대적 기준을 추가하였다. 1930년의 제3회 “언문철자법”에서는 “용어는 현대 경성어로 표준함”이라 하여 제2회와 유사한 내용으로 표현을 달리 하였다. 이러한 표준어에 의해 교과서가 제작되고, 교육이 피해졌다. 이에 서울말은 크게 보급되어 공통어로 자리잡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철자법의 규정 외에 “조선어사전”도 간행하였다. 이는 1911년에 착수하여 1920년에 간행되었는데, 한일사전(韓日辭典)의 체제로 된 것이다. 본문이 985면인 큰 사전으로, 전체 어휘는 65,000어 정도로 추정된다. 어휘는 한자어가 많아 고유어와 한자어의 비율이 3 대 7정도로 되어 있다(이승녕, 1975). 이 “조선어사전”도 다소간에 표준어 보급에 기여하였을 것이다.

2.2.3.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표준어 정책

조선어학회는 철자법의 안을 만들고, 표준어를 심의하는가 하면, 사전을 만들어 표준어 보급을 하였다. 1933년 제정 공포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 “총론”에 표준말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는 시대, 사회, 지역적 기준을 제시함으로, 종전의 “언문철자법”의 기준을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논의된 표준어 기준을 참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1902년 岡野久胤이 표준어란 “동경의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언어, 곧 중류사회의 남자의 언어를 가려내는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 때의 논조는 모두 “동경의 중류사회의 교양층의 언어”를

기조로 하여 표준어를 확립한다는 쪽으로 수렴되어 있었다(眞田信治, 1988). 이러한 견해가 수용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이후 표준말은 서울의 중류사회의 말이 되게 되었다. “맞춤법 통일안”에는 표준어의 기준 외에 “부록1 표준어”에 8개항을 두고 있는데, 이들은 주로 맞춤법과 관련된 것을 규정하였다.

1936년 조선어학회는 또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간행하였다. 이는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철자법의 통일과 함께 표준어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기에 표준어 사정을 한 것이다. “조선어 표준말 모음”은 비록 어휘의 수는 많지 않으나, 종전에 없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어집이다. 조선어학회는 “조선어표준어사정위원회”를 구성하여 1935년 1월부터 1936년 8월에 걸쳐 표준말을 사정하여 “發布”한 것이다. 사정은 통일안의 표준어 규정을 원칙으로 적용하였고, 보편성이 있는 방언도 참작하였다.

사정 어휘의 범위는 상용어 가운데 동의어(同義語)와 근사어(近似語)에 한하였고, 표준말은 여럿 가운데 하나만을 취하고, 간혹 준말[略語]을 인정하였다. 사정 어휘는 총 9,547개로, 표준어 6,231개, 비표준어 3,082개, 약어 134개에, 한자어 100개가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조선어학회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하며 “이 표준말의 協同的 愛用”을 호소하였다.

“조선어 대사전” 편찬 사업은 1929년 조선어학회와는 별도로 “조선어사전 편찬회”가 창립됨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1936년 조선어학회가 이 편찬회를 인수하게 되어 사전 편찬 사업은 학회로 넘어왔다. 1941년에는 사전의 첫 권이 완성되어 조판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일제가 소위 조선어학회사건을 조작하여 사전은 출판이 중단되었다. 그리하여 그 첫째 권은 해방된 뒤 1947년에 “조선말 큰사전”으로 간행되었다. 그 뒤의 간행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순조롭지 못해 마지막 권인 제6권은 1957년에야 간행되었다. 따라서 “조선말 큰사전(제3권 이후 “큰사전”)”은 간행을 시작한 지 10년만에 마침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었다. “큰사전”의 어휘는 총 164,125어이며, 이 가운데 표준어는 140,464어이고, 사투리는 13,006어이다.

“큰사전”은 “범례”에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원칙으로 기준 삼았음”

이라 하여 “표준말 모음”을 기준으로 편찬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로는 “표준말 모음”을 그대로 따른 것은 아니었고, 술한 수정이 가해져 있었다. 사정의 편협성을 지양한 것이다(이기문, 1989). 이러한 정신은 다음날 “표준어 규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큰사전”은 그 역사성이나 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일반 국민에게 미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연이어 개정판이라 할 사전들이 간행됨으로 더욱 그리 되었다.

한글학회는 새로 “중사전”과 “새 한글사전”을 간행하였다. “중사전”은 1958년에, “새 한글사전”은 1965년에 각각 간행되었다. 한글학회는 표준말을 부분적으로 계속 개정하였다. 이는 “표준말 모음” 자체의 모순이나 미비점에 의해 수정되거나, 언어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다. “중사전”과, “새 한글사전”에서는 부분적으로 “큰사전”의 표제어가 수정되었다. 이들 두 사전은 “큰사전”의 개정판이라 할 만한 것이다. 그래서 한 때는 “중사전”이 표준이라느니, “새 한글사전”이 표준이라느니 하기도 하였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큰사전”은 권위를 누릴 사이가 없었고, 표준어 또한 그 권위가 실추되게 되었다. 거기에는 문교부의 교과서는 이들 개정에 따라 수정되었고, 때로 독자적으로 표준어를 개정하여 교과서에 반영하기도 해 혼란이 일어 국민들의 불평을 사기도 하였다. 이는 표준어 정책사에 있어 반성해야 할 부끄러운 과거이다.

2.2.4. 교육부의 표준어 정책

교육부의 표준어 정책은 한글학회의 언어규범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조선어학회의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그 기준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에 언어가 많이 바뀌고, 사정한 낱말도 10,000 단어에도 미치지 않아 사전들 간에 표준어가 다른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 거기에는 표준 발음법도 갖추지 못했다. 이에 새로운 표준어 규범의 제정이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다. 문교부가 발표한 “표준어 규정 개정의 경위와 개요”에는 당시의 표준어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① 표준어 사정 원칙이 비체계적이고, 표준 발음법이 없음.
- ② 50년 전과 현대 국어가 많이 달라졌음.
- ③ 국어 사전들 간에 불일치 사례가 있음.
- ④ 발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어교육에서 발음교육을 실시하지 못함.

이에 1970년 정부는 개정 작업을 착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차원의 표준어 정책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교부에서는 1970년 4월 국어조사연구 위원회를 구성, 맞춤법과 함께 표준어 규정 개정 작업을 위탁하였다. 동 위원회는 다시 “표준말 심사위원회”를 두고, 문계성이 있는 16,500여 어휘를 사정하여, 1977년 그 연구 결과를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문교부에서는 이를 접수,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1979년 최종안인 “표준말 재사정 시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는 확정이 보류되었다. 문교부는 1981년 이 사업을 학술원에 넘겨 재사정하도록 하였고, 1984년 이의 개정안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개정안도 확정이 보류되고, 1985년 다시 학술원 산하의 국어연구소에 재검토, 보완하도록 하였다. 국어연구소는 이를 재검토하여 1987년 “표준어 규정안”을 마련하여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이에 문교부는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마침내 1988년 1월 문교부 고시 88-2호로 “표준어 규정”을 고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적 규범으로서의 정부의 “표준어 규정”은 20년이란 진통 끝에 마침내 햇별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1년이란 준비 기간을 거쳐 1989년 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박갑수, 1990).

- ① 표준어 대상 기준을 합리화하였다.
- ② 표준어 사정 원칙상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였다.
- ③ 표준 발음법을 새로 정하였다.
- ④ 현실 언어를 존중하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였다.

14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2004년 봄)

따라서 새로운 표준어 규정은 한 마디로 언어 현실의 변천을 수용하여 언어생활을 원만히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 언어가 많이 수용됨으로 표준어가 많이 바뀌어 한동안 혼란은 면치 못하게 되었다. 개정된 “표준어 규정”의 체제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표준 발음법”의 2부로 되어 있으며, “표준어 사정 원칙”은 3장 26항, “표준 발음법”은 7장 30항으로 되어 있다.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는 우선 표준어의 개념을 바꾸었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였다. 중류사회란 계급적 특성 대신 교양인을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는 “서울말로 한다” 대신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여 서울 지역의 실재(實在) 언어가 아닌, 이상적인 언어, 또는 보편적인 언어를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었다. “제2장 발음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현실음의 낱말을 표준어로 삼았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간(間)> 칸, ㄷ나불> ㄷ나풀, 가을카리(秋耕)> 가을갈이, 가리> 갈비, 구짓> 굴짓, 수지(休紙)> 휴지, 깡충깡충> 깡충깡충, 오뚝이> 오뚝이, 멧장이> 멧쟁이, 괴팍·괴팍하다> 괴팍하다, 상치> 상추, 꼭둑각시> 꼭두각시, 망그뜨리다> 망가뜨리다, 흥헛다> 흥업다

본말과 준말, 또는 방언과 표준어의 관계로 보던 것도 그 중 어느 하나가 널리 쓰일 때 그 낱말을 표준어로 삼아 실용에 편하게 하였다.

무우·무> 무, 장사아치·장사치>장사치, 새앙쥐·생쥐>생쥐
경황없다·경없다>경황없다, 수두룩하다·수둑하다>수두룩하다, 아래로·아래로>아래로, 퇴박맞다·퇴맞다>퇴박맞다, 귀에지·귀지>귀지, 까딱하면·까딱하면>까딱하면

“제3장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에서는 한자어 대 고유어나, 표준어 대 비표준어에서 널리 쓰이는 하나를 표준어로 삼고, 몇 가지

형태의 동의어가 널리 쓰일 때는 모두 복수표준어로 인정하였다는 것이 또 큰 특징이다. 이들 예를 몇 개 보면 다음과 같다.

가루약·말약>가루약, 사래밭·사래전>사래밭, 잎담배·입초>잎담배
 단벌·홀벌>단벌, 멧누에·산누에>산누에, 잇솔·칫솔>칫솔
 가엽다-가없다, 강냉이-옥수수, 녕쿨-덩굴, 눈짐작-눈대중·눈어림, 버
 들강아지-버들개지, -(으)셔요- -(으)세요, 일찌꺼기-일찌감치, 자물통-자물
 쇠, 호콩-땅콩

이러한 것은 모두 언어 현실을 존중한 것으로 국민의 실용적 언어생활을 위한 것이니 바람직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 하겠다.

“표준 발음법”은 종전에 없던 것으로, 발음의 원칙을 제시하여, 국어의 발음을 통일하고 혼란을 막고자 규정한 것이다. “표준 발음법”은 북한이나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는 일찍부터 제정되어 있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1988년에야 비로소 제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발음법 제정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이는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러한 원칙 아래 자음과 모음의 발음, 소리의 길이, 받침의 발음, 소리의 동화, 된소리되기, 소리의 첨가 등의 발음법을 규정하였다. 이로써 그간 혼란이 빚어지던 발음이 통일되게 되고, 2세들에게 올바른 발음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2.5. 문화부의 표준어 정책

국어정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문화부가 되어 여기에서도 표준어 정책이 수행되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이 어문 규범 관련 사업과 국어 순화 사업이다.

문화부에서는 문교부의 “표준어 규정”에 이은 사업으로, “표준어 모음”을 1990년 9월 문화부 고시 제88-2호로 공포하였다. 이는 국어연구소에서 조사 및 검토하고, 문화부의 국어심의회 한글분과위원회에서 표준어로 심의 확정된 약 1,400개 정도의 고유어를 모아 발표한 것이다. 이들 표준어

모음은 “새 한글사전”(한글학회, 1965)과 “국어대사전(민중서림, 1982) 사이에 혼란을 보이는 고유어 단어들을 “표준어 규정”에 따라 심의해 각종 국어 사전이나, 출판물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막게 한 것이다. 심의 내용은 “1. 어휘 선택 2. 발음 1) 장단, 2) 경음”으로 되어 있다. 이는 혼란을 빚고 있는 어휘를 사정하여 표준어에 대한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매우 실용적인 사업을 한 것이라 하겠다.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국어대사전(두산 동아)” 전 3권은 1999년 간행된 표준어 사전의 결정판이다. 이는 1992년 편찬 사업을 시작하여 8년만인 1999년에 완간을 보게 된 것이다. 연인원 500여명이 동원된, 표제어 50만 단어의 표준어 대사전이다. 이 사전을 편찬함에는 어문 규정 적용에 중점을 두었고, 국민의 국어생활에 표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심재기, 1999). 따라서 이 사전은 문자 그대로 정부가 표준어 보급 정책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간행한 것이라 하겠다. 다만 사전 간행에 앞서 서울말의 체계적 실태 조사가 미흡했다는 등의 지적은 아쉬운 점이며, 많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표준국어대사전”과는 달리 이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어문각, 1992)은 어문 규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표준어의 혼란을 빚게 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2.2.6. 기타 부수될 표준어 정책

지금까지 국내의 표준어 규범을 중심으로 표준어 정책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여기에 부수되어야 할 표준어 정책이 있다. 그것은 북한의 표준어 정책 및 중국 동포를 위한 표준어 정책과 국어순화 정책이다.

남북한은 표준어로 삼는 말의 이름부터 다르다. 남한의 표준어에 대해 북한은 “문화어”라 한다. 문화어는 1966년의 김일성 교시에 따라 서울의 표준말과 구별하기 위해 “노동계급의 평양말”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사회과학출판사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의하면 문화어는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 밑에 혁명의 수도를 중심지로 하고 수도의 말을 기본으

로 하여 이루어지는, 로동계급의 지향과 생활감정에 맞게 혁명적으로 세련되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언어"라 되어 있다. 따라서 이름만이 아니라, 그 기준도 다르다. 북한은 “말다듬기”에 이어 1966년 “조선말 규범집” 공포를 계기로 “문화어운동”이란 어학혁명을 전개하였다. 이는 1968년 계간지 “문화어학습”이 창간되며 본격화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남북의 어휘상의 차이가 고착되게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6년의 “조선말 규범집”에 “표준 발음법”이 공포되었는데, 여기에서 “조선말 발음법은 혁명의 수도 평양을 중심으로 하고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된 문화어의 발음에 기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 기준은 두음법칙 말고는 대체로 한국의 “표준 발음법”과 같은 것이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도 “조선말 <4법> 규범” 가운데 “조선말표준 발음법”을 두고 있는데, 이 내용은 대체로 북한의 “문화어발음법”과 같다.

국어 순화는 일찍이 선조조(宣祖朝)에, 임란 때 염습된 왜어(倭語)를 엄금한 것이 최초의 정책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대왕 실록 권43에 보이는 “都中小民 久陷賊中 不無染習倭語之理 各別掛榜痛禁 如或有倭語者各里中嚴加科正 毋使蠻夷讐賊之音”이 그것이다.

그 뒤 갑오경장 때 한문위주에서 “國文爲本”으로 한문의 탈피를 보게 되었으며, 이러한 운동은 조선어학회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1948년 문교부의 “우리말 도로찾기”를 시발로 하여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순화 정책이 펼쳐졌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국어순화운동 협의회”가 구성되고, 국어심의회의 “국어순화 분과위원회”가 국어 순화 심의활동을 한 것이다. 순화 결과는 “국어순화자료집”으로 간행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국어심의회의 외에 정부의 부처나 기관 및 법원 등에서도 활발히 순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순화 작업은 신문, 방송 등 매스컴에서도 호응하여 활발히 전개하였다. 북한에서도 해방 후 한글전용과 함께 “말다듬기”에 나서 순화 운동을 하였고, 이는 1960년대 후반부터 “문화어운동”으로 발전해 나갔다. 문화운동은 한자어와 일본어는 물론 문체까지 대상으로 하여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작업을 가리킨다. 동북 삼성에서도 “조선말의 명사 술어의

규범화원칙”, “다듬은 말 처리 세칙” 등 여러 어휘 규범까지 제정, 활발히 순화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표준어 정책의 반성

우리의 표준어 정책은 오랜 세월 동안 비격식 표준화 정책으로 일관해 오다가, 개화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격식 표준화 정책으로 바뀌었다. 말을 바꾸면 오랜 동안 개방정책을 펴다가 개화기에 와서 비로소 폐쇄정책을 펴게 되었다.

그러면 그 동안의 우리의 표준어 정책은 어떻게 수행되었는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너무 방치되었고, 무관심했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폐쇄정책을 펴면서는 강력히 추진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뒷집을 지고 있다가 겨우 1970년대에 와서 순화정책을 조금 폈고, 1980년대 후반에 와서 비로소 정부차원의 “표준어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때도 보급 정책은 제대로 펴지 않았다. 교사 연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4대 어문규범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지난 오늘에도 규범에 어긋난 표현이 도처에서 횡행한다. 신문 방송 등 매스컴은 규범에 벗어난 오용의 전시장이다. 여기서는 이런 표준어 정책에 대해 몇 가지 반성과 함께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첫째,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지양해야 한다.

남북한은 다른 민족이 아니다. 같은 민족이다. 이들의 언어가 이질화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남북이 분단되어 왕래가 자유롭지 못한다 하면, 표준어 기준을 달리 하는 등 인위적인 정책의 차이로 말미암아 많은 언어의 차이가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제도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말이 생겨나고, 사정 및 말다듬기를 달리 하여 어휘상의 차이가 생겨난 것을 들 수 있다.

“가슴노리(가슴의 맥박이 뛰는 부분), 갑자르다(힘겨워 킁킁거리다), 개

잡다(신통치 않다), 난데놈(타관 놈), 날총각(몹시 남을 해롭히거나 난봉을 부리는 총각), 돌서덕(돌이 많은 곳)” 등은 남한에서는 표준어로 인정하지 않는 말이나, 북한에서는 문화어로 인정하는 말이다. 이러한 것은 물론 남한에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지양해야 한다. “가시아버지(장인), 소래(대야), 야시꿍다(아니꿍다), 허분하다(느슨하다)”는 남한에서 방언으로 다루는 말을 북한에서 문화어로 하고, 괄호 안에 제시한 우리의 표준어도 문화어로 수용해 복수표준어를 인정할 경우이다. 앞으로의 사정은 이러한 포용의 방향을 지향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수표준어를 금기시하지 않는다.

표준어는 특정 방언에서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공통어를 토대로, 거기에 국민적 의식이 반영되어 제정된 이상적 언어체계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공통어로, 이는 특정 지역어를 기반으로 세련된 것이며, 널리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실재언어라는 것이다. 우리의 표준어는 전자에 가까운 것이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심리적인 존재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말”이 아니라도 국민의식이 표준어로 수용하겠다는 표준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문체상의 차이 등 표현 효과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복수표준어를 인정하는 것이 좋다. 표준어는 유일무이해야 한다는 생각은 배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표준어 규정”에서 복수표준어를 많이 인정한 것은 잘 한 처사이다.

셋째, 언어 현실을 고려한 국어 순화를 한다.

앞 장 “표준어 정책의 회고”에서는 규범을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보았기에 국어 순화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한자어가 외래어나 아니냐, 외래어는 국어나 아니냐의 문제 등 어종(語種)의 문제는 복잡하다. 한자어와 외래어는 국어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적어도 준국어(準國語)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들 자체가 바로 순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자어는 현실적으로 우리 언어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체이기 때문이다.

한자어와 외래어가 순화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비표준어인 경우가 아니면, 표현의 문제라 할 것이다. 한글 전용을 하기 위해서 한자어를 풀어 쓴다거나,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 외래어를 번역 차용한다거나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순화를 할 때는 심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거부감을 갖게 하여서는 안 된다. 남북이 이질화되지 않게 신경도 써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말다듬기”처럼 원말을 사용치 않게 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남북의 언어는 심각한 이질화를 초래하게 된다. 언어 현실을 고려해 원어와 순화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토록 할 것이며, 순화어는 권장 사용토록 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

넷째, 규범과 언어상의 문제점을 계속 개선 보완한다.

“표준어 규정”은 전무하거나, 있다고 해도 별로 의지가 되지 않는 기준을 바탕으로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이의 제정은 국어 정책사상 획기적인 것이다. 이러한 규범이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예외 조항이 너무 많다. 이는 일반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 표준어 규정 제7항의 “-ㅁ/-수-”에 따른 어휘사정은 재고돼야 하겠고, 제21항, 제22항, 제25항은 단수표준어를 사정한 것으로 원칙엔 무리가 없으나, 어휘 사정에는 문제가 있다. 언어 현실과 표현 효과를 고려할 때 복수표준어로 함이 바람직할 것이 여럿 보인다. 그리고, “표준어 규정”이 어휘 사정에 치중하고 있는데, 문법이나 문형의 규범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마스크에서 많이 쓰는 “-르 전 망이다/ -ㄴ 채 발견됐다” 등의 표현은 이러한 필요성을 절감케 한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언어의 변화를 예의 주시하여 표준어 재사정의 준비도 기울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표준어 사정은 바른말의 여부도 중요하나, 이보다 더 중시되어야 할 것은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 하는 사용 빈도이어야 한다.

다섯째, 표준어 보급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표준어는 정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실용돼야 한다. 우선 표준어 사용의 당위성과 실용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보급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때 표준어는 좋은 것, 방언은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고취하거나, 방언을 박멸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이중 방언(二重方言)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지도되어야 한다. 표준어는 교양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마땅히 써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심어 줄 일이다. 그렇게 하면 다소 표준어를 안 쓰거나, 못 쓰더라도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의식이 있는 곳에 정상화는 자연스럽게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글 보급에 그러했듯, 언론 매체의 적극적 동참을 유도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선어문 학습사용 상별실시 규정”까지 만들어 조선어 사용을 독려하고 있는 동북 삼성의 민족어 정책의 정신에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민수(1985), 북한의 국어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김주필(1990), ‘표준어 모음’의 심의 경위와 해설, 국어생활(제22호), 국어연구소.
 박갑수(1984), 국어의 표현과 순화론, 지학사.
 박갑수(1988), 현실언어를 수용한 체계화된 개정안-개정된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의 허실, 동양문학, 제2호, 동양문학사, 박갑수(1994), 우리말 사랑 이야기, 한샘출판사에 재록.
 박갑수(1990), 새로운 언어규범에 대하여, 한국어 연구논문, 제26호, KBS 한국어연구회, 박갑수(1994), 올바른 언어생활, 한샘출판사에 재록.
 박갑수(1999), 아름다운 우리말 가꾸기, 집문당.
 박갑수(1999), 현대인의 언어생활과 공용어 문제, 이중언어학, 제17호, 이중언어학회.

22 새국어생활 제14권 제1호(2004년 봄)

- 심재기(1999), 머리말, 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이기문(1989), (표준어규정 해설) 머리말, 한글 맞춤법 및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연구소.
- 이승녕(1975), 조선어사전 해제, 조선어사전(영인본), 아세아문화사.
- 이응백(1988), ‘표준어 규정’ 해설, 국어생활(제13호), 국어연구소.
- 이익섭(1983), 한국어 표준어의 제문제, 이기문 외(1983), 한국 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 이익섭(1988), 국어 표준어의 형성과 변천, 국어생활(제13호), 국어연구소.
- 조선어학회(1946),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조선어학회.
- 최용기(2003), 남북한 국어정책 변천사 연구, 박이정.
- 허만길(1993), 한국 현대 국어정책 연구, 홍익대 박사학위 논문.
- 小倉進平(1940), 朝鮮語學史, 刀江書院.
- 眞田信治(1988), 標準語の 成立 事情, PHP 研究所.
- 鹽田紀和(1977), 諸國語の 混亂と 統一, くろしお出版.
- 文化廳(1976), 標準語と 方言, 敎育出版.